

「Young 하나 통장」 특약

제1조 적용범위

Young 하나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또는 MMDA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은 1인 1계좌로 만 35세 이하의 고객만 가능합니다.

제4조 이자지급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1. 보통예금: 매년6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저축예금 및 MMDA : 매년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일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필수요건의 월별 실적을 가입 익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1가지를 충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우대 서비스 I 대상 거래 시” 월 10회의 수수료를 면제하며, 2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대상거래” 월 10회 수수료 면제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대상거래” 1),2) 월 5회 수수료 면제를 제공합니다. (단,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 하여 해당월의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함)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특별요건의 실적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제시 시점 해당월 포함하여 6개월 경과월의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제5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I” 거래 시에는 횟수제한 없이, 본 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II” 거래 시에는 합계 총5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특별요건 실적은 증명시점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필수요건)

- 1) 하나카드사 또는 당행 제휴카드사의 체크카드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 2)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시
- 3) 타인으로부터 월 10만원 이상 입금 시
- 4) (월 3회이상) 하나 멤버스 앱 로그인 시

(특별요건)

- 1) 봉사활동 6개월간 10시간 이상 증명 시
- 2) 학기 평균학점 B학점 이상 증명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I)

- 1)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2)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 3)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4)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 5) 통장 재발행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II)

- 1)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2) 다른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주1)}
- 3) 입출금거래내역 문자통지 서비스 (본 서비스는 특별요건 충족 시 6개월동안 횟수 제한 없이 제공)

^{주1)} 다른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다른은행 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6조 통장전환

만 36세가 되는 첫 영업일에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전환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자동전환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통장인자 또는 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단, 전환시점에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신규중단 시에는 수수료 면제통장 상품 중 하나로 전환해 드립니다.)

제7조 부가서비스

① 영업점 창구에서 본인의 배낭여행, 어학연수, 유학 관련 자금용으로 외화 현찰(지폐) 환전이나 해외 송금 시 환율우대를 제공합니다.

- 주요통화 USD / JPY / EUR : Spread 50%

- 그 외 11 개국 통화 : Spread 20%

(11 개국 통화 : HKD, THB, SGD, NZD, AUD, GBP, CAD, CHF, SEK, DKK, NOK)

②은행은 이 상품 가입한 다음년도 첫 영업일 이후 고객이 아래와 같이 상품 신규하는 경우 금리 우대서비스를 1인당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1)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여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늘~하나적금, 씨크릿적금, 바보의 나눔 적금을 3년제 이상 신규하는 경우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 연 0.5% 우대이율 제공

2)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여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KEB하나은행 신용대출을 신규하는 경우 연 0.5% 우대이율 제공

③본조 1항의 서비스는 이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장 7년까지 적용되며, 2항은 본 상품 가입한 다음년도 첫 영업일부터 최장 7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만 37세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적용)